

# 영국 탄소배출권거래제 관련 민사소송의 최근 동향에 관한 연구

최경호



기후변화법제 연구 15-19-⑥

# 영국 탄소배출권거래제 관련 민사소송의 최근 동향에 관한 연구

최 경 호

# 영국 탄소배출권거래제 관련 민사소송의 최근 동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cent Trend of Civil Litigations  
related to the UK Emissions Trading Scheme

연구자 : 최경호(부연구위원)

Choi, Kyung Ho

2015. 10. 31.

# 요약문

## I. 배경 및 목적

### □ 연구의 배경

- 유럽연합의 탄소배출권 할당계획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1단계(2005-2007), 제2단계(2008-2012)를 거쳐 현재는 제3단계(2013-2020)에 있음
- EU는 2005년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배출권거래 시장을 운영 중
  - 유럽내에서는 2015년 현재 31개국(회원국 28개 및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등 3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 시장이 형성됨
  - 2012년 기준 전세계 배출권 거래량 107.3억 톤 중 72%에 해당하는 77.2억 톤이 EU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거래되었음
- 영국은 EU의 주요국으로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 ETS)가 적용되며 이에 따르는 각종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함
- EU내 주요 국가인 영국은 동 제도 시행 초기 탄소배출권 할당에 관한 소송이 있었으나, 현재는 할당 분야에 대한 소송은 희박하며, 배출권거래와 관련하여서는 민사간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음

## □ 연구의 목적

-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온실가스배출국으로서, 지구온난화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15. 1. 1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시장이 개장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가 개시되었음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실시 초기시점이기도 한 현재, 탄소배출권 할당과 관련 일부 기업이 환경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진행 중에 있음. 현재는 할당분야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나, 본격적으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정부를 상대로 하는 다른 유형의 행정소송 뿐만 아니라, 사인간의 민사소송 등, 그 유형이 다양해질 수 있음
- 한편, EU의 경우 2005년부터 EU차원의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EU-ETS는 제1기(2005-2007), 제2기(2008-2012)를 거쳐, 현재 제3기(2013-2020)에 있음. EU내 주요 국가인 영국은 동 제도 시행 초기 탄소배출권 할당에 관한 소송이 있었으나, 현재는 할당 분야에 대한 소송은 희박하며, 배출권거래와 관련하여서는 민사간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음
- 영국의 탄소배출권 관련 민사소송 분야 사례분석은, 한국에서 탄소배출권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예측해보고, 필요시 입법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연구의 가치가 있음

## II. 주요 내용

□ 영국 탄소배출권 거래제 검토

□ 영국의 민사소송 절차 일반

□ 탄소배출권거래 관련 영국 민사소송 사례 검토

○ 영국 민사소송 사례 예시

- Armstrong DLW GMBH v. Winnington Networks Ltd

판례번호: [2012] EWHC 10

해당법원: Chancery Division, High Court

판결일자: 2012. 1. 11

- 동법원의 판사는 Winnington이 기망자(fraudster)의 행위로 인한 손실을 감당해야 하며, Armstrong을 상대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판시. Winnington은 결과적으로 기망자와 거래행위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음. 법원은 새로운 고객과 거래를 하는 당사자는 한걸음 물러서서, 거래 전체 흐름을 고려하며, 거래상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봄

- 또한 동 판사가 제기한 주요 논점 중 하나는 배출권의 법적 성격. 양당사자는 배출권할당이 일종의 재산적 성격을 고려하였고, 탄소배출할당이 개인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처리는 영국법상 신탁법에 의거해야함. 동 사안은 배출권 시장에 참여한 당사자들에게 배출권할당의 의미를 더욱 확고히 제공할 수 있으며 탄소배출권 거래에 있어 사기부분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명확한 구도를 만드는데 일조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음

○ 기타 ETS 관련 주요 영국 민사소송 목록

- Ineos Manufacturing Scotland Ltd v Grangemouth CHP Ltd and another

판례번호: [2011] EWHC 163 (Comm),

해당법원: QBD, Commercial Court

판결일자: 2011. 2. 11.

주요쟁점: 계약상 문구(term)의 의미에 관한 분쟁

- Deutsche Bank AG v Total Global Steel Ltd

판례번호: [2012] EWHC 1201 (Comm)

해당법원: QBD, Commercial Court

판결일자: 2012. 5. 11.

주요쟁점: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 CF Partners (UK) LLP v Barclays Bank Plc and another

판례번호: [2014] EWHC 3049 (Ch)

해당법원: Chancery Division

판결일자: 2014. 9. 24

요쟁점: 사인간 비밀유지 의무 관련 손해배상

○ 시사점

- 영국의 경우 탄소배출권이라는 고유의 특성에 기인한 독창적인 유형의 민사분쟁은 희박하며, 민사거래의 대부분의 대상이 소송의 객체가 될 수 있듯이 탄소배출권도 이와 같이 사적거래 대상물로서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 민사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들을 본문에서 검토하였음

- 영국의 관련 민사소송의 시사점은 탄소배출권거래에 있어서도 다른 민사거래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유형의 불법적 행위(사기, 고객 비밀정보 활용)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거래에 있어 의심의 여지가 없는지 등, 일반적인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것과 거래 당사자는 계약내용의 충실히행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임

### Ⅲ. 기대효과

####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탄소배출권거래제 관련 발생할 수 있는 민사소송의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추후 발생가능한 민사분쟁에 대한 대응의 기반자료 및 대응법제를 위한 분석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영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서 발생한 민사분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도 발생가능한 민사 분쟁 유형을 예상하고 대비함으로써,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및 관련 정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주제어 : 영국탄소배출거래제도, 영국민사소송법, 탄소배출권 민사소송



# Abstract

## I .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of this study

- Three operational phases of the EU Emission Trading Scheme: the first phase(2005-2007) and the second phase(2008-2012) had been passed. Currently the EU ETS is in the third phase(2013-2020)
- The EU ETS was launched in 2005. Currently EU has the world largest scale of carbon trading markets
  - In the Europe as of 2015, EU ETS covers 31 countries(28 members and three non-EU members(Iceland, Norway, and Liechtenstein))
  - As of 2012, In the Europe as of 2015, EU ETS covers 31 countries(28 members and three non-EU members(Iceland, Norway, and Liechtenstein))
- As a leading country in the EU, the UK is subject to the EU ETS rules and regulations
- In the very beginning of the EU ETS, there is a litigation regarding the allocation. Recently, litigation on the allocation is rare and a few civil cases on ETS had been processed

Purpose of this study

- As the worlds' 10th largest emitter of greenhouse gases, Korea launched a nationwide ETS market according to 「Act on Allocation and Trading of GHG Emissions」 and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 There are litigations on the allocation of the allowances are processing against the government of Korea by private companies. At this point administrative litigations on the ETS against the government are general types of litigations. However, in the near future, more diversified legal litigation, including civil litigation would occur
- Analysis of the UK civil litigations in the area of the ETS would be useful to anticipate possible legal issues in private transactions of emission allowances and provide legal guidance

## **II. Main Contents**

Review of the UK Emissions Trading Scheme

Review of the UK Civil Procedure

Review of Civil Litigations on the UK ETS

- Armstrong DLW GMBH v. Winnington Networks Ltd  
Case Number: [2012] EWHC 10  
Court: Chancery Division, High Court  
Date: 2012. 1. 11

Main issue: 1) EU allowances were held to be intangible property, However, the court failed to provide classification of which type of intangible property EUAs were

2) Whether defendant was able to rely on defence of 'bona fide purchase for value without notice'

○ Deutsche Bank AG v Total Global Steel Ltd

Case Number: [2012] EWHC 1201 (Comm)

Court: QBD, Commercial Court

Date: 2012. 5. 11.

Main Issue: 1) Whether defendant being in breach of contract 2) Whether claimant being entitled to damages

○ CF Partners (UK) LLP v Barclays Bank Plc and another

Case Number: [2014] EWHC 3049 (Ch)

Court: Chancery Division

Date: 2014. 9. 24

Main Issue: Breach of confidential information / contractual obligation of confidentiality and exclusivity

### III. Expected Effect

- Analysis of the UK civil litigations in the area of the ETS would be useful to anticipate possible legal issues in private transactions of emission allowances and provide legal guidance

➤ Key Words : UK ETS, UK Civil Procedure, Civil Litigation on the ETS

# 목 차

요 약 문 .....	3
Abstract .....	9
제 1 장 서 론 .....	15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5
I. 연구의 필요성 .....	15
II. 연구의 목적 .....	16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16
I. 연구 방법 .....	16
II. 연구 범위 .....	16
제 2 장 영국 탄소배출권 거래제 검토 .....	19
제 1 절 탄소배출 감축 .....	19
I. 영국 국내적 탄소배출 감축 의무(The Climate Change Act 2008) .....	19
II. 국제사회에서 영국에 부과한 탄소배출 감축 의무 .....	26
제 2 절 영국 온실가스 배출 일반 .....	31
I. EU ETS .....	31
II. 영국 온실가스 배출 현황 .....	34
제 3 장 탄소배출권거래 관련 영국 민사소송 사례 검토 .....	35
제 1 절 영국 민사소송 절차 일반 .....	35

I. 민사소송의 목표 .....	35
II. 소송절차 .....	38
III. 영국 민사소송 주요 조항 .....	42
제 2 절 탄소배출권거래 관련 영국 민사소송 사례 검토 .....	45
I. 서 설 .....	45
II. Armstrong v. Winnington .....	48
III. CF Partners (UK) LLP v Barclays Bank Plc and another .....	53
제 3 절 시사점 .....	55
제 4 장 결 론 .....	59
참 고 문 헌 .....	61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I.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온실가스배출국으로서, 지구온난화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15. 1. 1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시장이 개장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가 개시되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실시 초기시점이기도 한 현재, 탄소배출권 할당과 관련 일부 기업이 환경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진행 중에 있다. 현재는 할당분야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나, 본격적으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정부를 상대로 하는 다른 유형의 행정소송 뿐만 아니라, 사인간의 민사소송 등, 그 유형이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EU의 경우 2005년부터 EU차원의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EU-ETS는 제1기(2005-2007), 제2기(2008-2012)를 거쳐, 현재 제3기(2013-2020)에 있다. EU는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배출권거래 시장을 운영 중에 있다.<sup>1)</sup> 유럽에서는 2015년 현재 31개국(EU회원국 28개 및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등 3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 시장이 형성되었다.

영국은 EU의 주요국으로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 ETS)가 적용되며 이에 따르는 각종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국가이다. EU내 주요 국가인 영국은 동 제도 시행 초기 탄소배출권 할당에 관한 소송이 있었

---

1) 2012년 기준 전세계 배출권 거래량 107.3억 톤 중 72%에 해당하는 77.2억 톤이 EU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거래되었다.

으나, 현재는 할당 분야에 대한 소송은 희박하며, 배출권거래와 관련하여서는 민사간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의 탄소배출권 관련 민사소송 분야 사례분석은, 한국에서 탄소배출권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예측해보고, 필요시 입법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 II.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영국에서의 탄소배출권거래 관련 민사소송의 최근 동향을 검토하여, 탄소배출권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사분쟁의 유형을 발굴하고, 필요시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영국법원의 최근 민사 판례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I.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수행은 ① 국내·외 문헌연구 및 국내외 주요기관의 온라인 홈페이지 활용한 자료수집, ② 영국의 탄소배출권 관련 주요 판례 자료 수집 ③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보 수집을 통해서 연구대상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분석하는 작업을 거쳤다.

### II. 연구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영국탄소배출권거래제를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영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 관련 민사소송사례를 검토하며, 관련 민사소송사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3장 전반부에

는 영국 민사소송절차의 일반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이와 더불어, 제3 장에서는 탄소배출권거래제 관련 영국 민사소송 실제 판결의 사실관계 및 법리분석 등을 한다. 제4장 결론에서는 영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 관련 민사소송이 우리 탄소배출권거래 제도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제 2 장 영국 탄소배출권 거래제 검토

### 제 1 절 탄소배출 감축

#### I. 영국 국내적 탄소배출 감축 의무(The Climate Change Act 2008)

##### 1. The Climate Change Act 2008의 의의

The Climate Change Act 2008에서는 영국정부의 탄소배출 감축의지 및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장기적인 장치를 만들었다. 동 법은 영국이 2050년까지 1990년 기준 최소 80% 탄소배출 감축 이행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sup>2)</sup>

동 제도의 정착을 돕기 위해, 동 법에서는 해당 5년 간 영국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법적으로 묶어두는 탄소 예산(carbon budgets)을 소개한바 있다.<sup>3)</sup>

Climate Change Act(2008) 제1조에는 2050년까지 1990년 탄소배출 기준 80% 감축의무를 주무장관(Secretary of State)에게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 1990년 기준(1990 baseline)의 의미는 1990년에 배출된 이산화탄소 배출 전체를 의미하며<sup>4)</sup> 동 법을 통해 법적구속력을 가진 의무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EU국가들이 금융위기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2050년까지 1990년대 대비 80%의 감축목표 제시는 동 기간 동안 EU 기준에 비해 30% 더 높은 감축 목표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저탄소 사회 실현에 대한 영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2) Climate Change Act 2008 1(1)

3) Id.

4) Climate Change Act 2008 1(2)

## 2. The Climate Change Act 2008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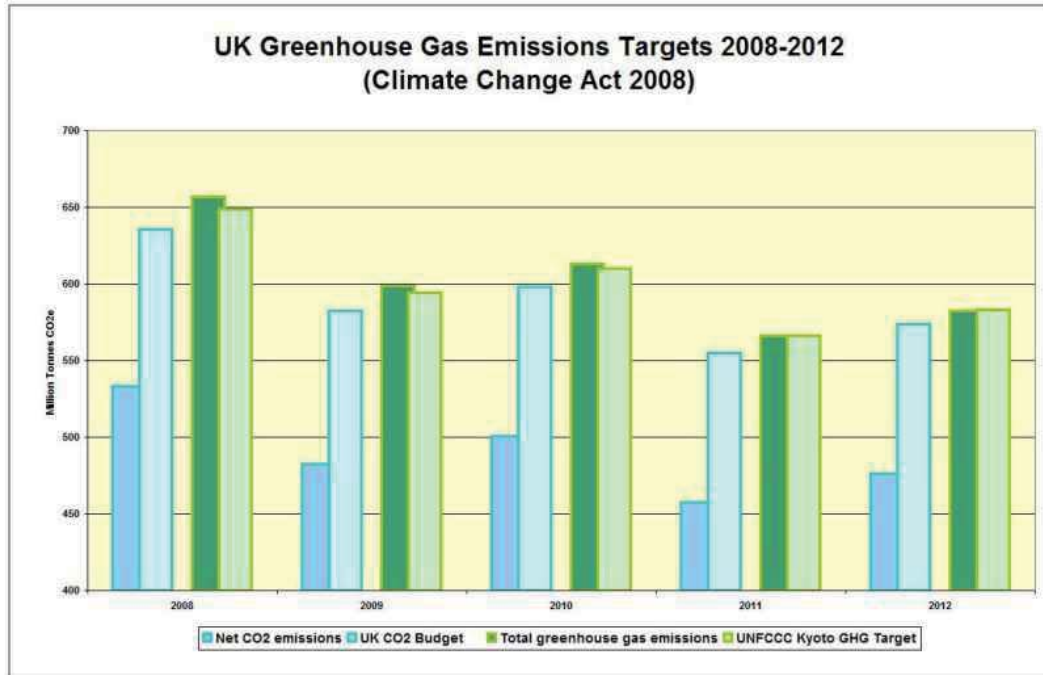
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Carbon Budgeting System(탄소예산 제도)를 2009년부터 2050년까지 수립하였다. 예산 수립기간은 5년단위 3기로 분류할 수 있으며 1) 2008-2012, 2) 2013-2017, 3)2018-2022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 관련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인 The Committee on Climate Change(기후변화위원회)를 창설하여, 매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을 설정하고 정부에 권고하며, 진행경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게끔 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 schemes), 바이오 연료 사용 증대, 가정 폐기물 감축 방안 도입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추가 조치에 필요한 2차적 법제(secondary legislation)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한편 동법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여도에 관한 보고의무를 해당 국가기관에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업체에도 부과하는 것이 특징이다.

[표: Climate Change Act 2008에 의해 부과된 영국 온실가스 감축목표]5)



출처: 영국 에너지 및 기후변화부

### 3. The Climate Change Act 2008의 구성

#### \*Climate Change Act 2008의 구성

##### Part 1 Carbon target and budgeting (탄소 목표 및 예산)

##### The target for 2050

1. The target for 2050.
2. Amendment of 2050 target or baseline year.
3. Consultation on order amending 2050 target or baseline year.

##### Carbon budgeting

4. Carbon budgets.

5) Resource: Department of Energy & Climate Change

5.Level of carbon budgets.

6.Amendment of target percentages.

7.Consultation on order setting or amending target percentages.

8.Setting of carbon budgets for budgetary periods.

9.Consultation on carbon budgets.

10.Matters to be taken into account in connection with carbon budgets.

**Limit on use of carbon units**

11.Limit on use of carbon units.

**Indicative annual ranges**

12.Duty to provide indicative annual ranges for net UK carbon account.

**Proposals and policies for meeting carbon budgets**

13.Duty to prepare proposals and policies for meeting carbon budgets.

14.Duty to report on proposals and policies for meeting carbon budgets.

15.Duty to have regard to need for UK domestic action on climate change.

**Determination whether objectives met**

16.Annual statement of UK emissions.

17.Powers to carry amounts from one budgetary period to another.

18.Final statement for budgetary period.

19.Duty to report on proposals and policies for compensating for budget excess.

20.Final statement for 2050.

**Alteration of budgets or budgetary periods**

21.Alteration of carbon budgets.

22.Consultation on alteration of carbon budgets.

23.Alteration of budgetary periods.

**Targeted greenhouse gases**

24.Targeted greenhouse gases.

25.Base years for targeted greenhouse gases other than CO2.

**Carbon units, carbon accounting and the net UK carbon account**

26.Carbon units and carbon accounting.

27.Net UK carbon account.

28.Procedure for regulations under section 26 or 27.

**Other supplementary provisions**

- 29.UK emissions and removals of greenhouse gases.
- 30.Emissions from international aviation or international shipping.
- 31.Procedure for regulations under section 30

## **Part 2 The Committee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 위원회)**

### **The Committee**

- 32.The Committee on Climate Change.

### **Functions of the Committee**

- 33.Advice on level of 2050 target.
- 34.Advice in connection with carbon budgets.
- 35.Advice on emissions from international aviation and international shipping.
- 36.Reports on progress.
- 37.Response to Committee's reports on progress.
- 38.Duty to provide advice or other assistance on request.

### **Supplementary provisions**

- 39.General ancillary powers.
- 40.Grants to the Committee.
- 41.Powers to give guidance.
- 42.Powers to give directions.

### **Interpretation**

- 43.Interpretation of Part 2.

## **Part 3 Trading schemes (거래제도)**

### **Trading schemes**

- 44.Trading schemes.
- 45.Activities to which trading schemes may apply.
- 46.Matters that may or must be provided for in regulations.

### **Authorities and regulations**

- 47.Relevant national authorities.
- 48.Procedure for making regulations.
- 49.Further provisions about regulations.

### **Other supplementary provisions**

50.Information.

51.Powers to give guidance.

52.Powers to give directions.

53.Grants to administrators and participants.

54.Power to make consequential provision.

**Interpretation**

55.Interpretation of Part 3.

**Part 4 Impact of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National reports and programmes**

56.Report on impact of climate change.

57.Advice of Committee on Climate Change on impact report.

58.Programme for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59.Reporting on progress in connection with adaptation.

60.Programme for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Northern Ireland.

**Reporting authorities: non-devolved functions**

61.Guidance by Secretary of State to reporting authorities.

62.Directions by Secretary of State to prepare reports.

63.Compliance with Secretary of State's directions.

64.Consent of, or consultation with, devolved authorities.

65.Report on exercise of power to give directions.

**Reporting authorities: devolved Welsh functions**

66.Guidance by Welsh Ministers to reporting authorities.

67.Directions by Welsh Ministers to prepare reports.

68.Compliance with Welsh Ministers' directions.

69.Consent of, or consultation with, Secretary of State.

**Interpretation**

70.Interpretation.

**Part 5 Other provisions (기타조항)**

**Waste reduction schemes**

71.Waste reduction schemes.

72.Waste reduction provisions: piloting.

73.Waste reduction provisions: report and review.

74.Waste reduction provisions: interim report.

75.Waste reduction provisions: roll-out or repeal.

**Collection of household waste**

76.Collection of household waste.

**Charges for carrier bags**

77.Charges for carrier bags.

**Renewable transport fuel obligations**

78.Renewable transport fuel obligations.

**Carbon emissions reduction targets**

79.Carbon emissions reduction targets.

**Miscellaneous**

80.Report on climate change: Wales.

81.Climate change measures reports in Wales.

82.Repeal of previous reporting obligation.

83.Guidance on reporting.

84.Report on contribution of reporting to climate change objectives.

85.Regulations about reporting by companies.

86.Report on the civil estate.

87.Power of Ministers and departments to offset greenhouse gas emissions.

88.Fines for offences relating to pollution.

**Part 6 General supplementary provisions (일반적 보충조항)**

**Territorial scope of provisions relating to greenhouse gas emissions**

89.Territorial scope of provisions relating to greenhouse gas emissions.

**Orders and regulations**

90.Orders and regulations.

91.Affirmative and negative resolution procedure.

**Interpretation**

92.Meaning of “greenhouse gas”.

93.Measurement of emissions etc by reference to carbon dioxide equivalent.

94.Meaning of “international carbon reporting practice”.

95. Meaning of “national authority”.

96. Meaning of “relevant Northern Ireland department”.

97. Minor definitions.

98. Index of defined expressions.

**Final provisions**

99. Extent.

100. Commencement.

101. Short title

## II. 국제사회에서 영국에 부과한 탄소배출 감축 의무

### 1. 교토의정서

#### 1) 교토의정서 배경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합의되었으며 동 의정서는 2005년 2월 16일 발효되었다.<sup>6)</sup> 한국의 경우는 개도국이라는 이유로 2008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의무과 부과되는 의무부담 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0위, GDP 규모 세계 10위국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자발적인 참여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탄소배출 감축을 이끌어 가기 위한 지구적 차원의 노력이 교토의정서를 통하여 상세한 기준을 만들고 관리, 감독 등의 필요를 위해 교토의정서의 채택은 필요한 것이었다.<sup>7)</sup>

6)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Kyoto Protocol, [http://unfccc.int/kyoto\\_protocol/items/2830.php](http://unfccc.int/kyoto_protocol/items/2830.php) (최종검색: 2015. 10. 25)

7) David Freestone & Charolotte Streck, “Legal Aspects of Carbon Trading, Kyoto, Copenhagen, and beyon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11.; Scott D. Deatherage,



## 2) 교토의정서 주요 내용

교토의정서의 주요내용으로는 주요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의 강제적 부과 및 교토 매커니즘 등을 포함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최상위국인 미국이 2001년 협약 탈퇴로 발효에 위기가 있었으나, 2004년 러시아의 비준에 따라 발효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2005년 2월 공식 발효로 구속력이 동반되고 있다.

부속서 I에 해당하는 선진 38개국에는 1차 이행기간인 2008년~2012년 사이에 주요 온실가스<sup>8)</sup> 총 배출량을 1990년 기준치 보다 평균 5.2% 감축의무과 부과되었다. 교토의정서 제정 시점에 미국의 경우 7%, EU의 경우는 8%, 일본과 캐나다는 6% 감축 등 감축량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감축량에 대해서는 일률적이지는 않았었다.<sup>9)</sup>

## 3) 교토의정서 상 영국의 탄소배출 감축 의무

EU는 환경문제와 관련 각종 협약의 타결점을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sup>10)</sup> 교토의정서 체결당시 유럽연합은 2010년까지 주요 배출을 감축하기로 하였으며 공동의 협의된 정책과 방법을 가지고 그 목표 달성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영국은 교토의정서상 첫번째 이행기간인 2008-2012년 동안 온실가스를 12.5% 감축시켜, 1990년도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제2기는 2013년부터 2020년 까지 8년동안이 그 이행기간이다. 동 기간 영국의 이행 감축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에 대한 논의는 진행중에 있다.

---

“Carbon Trading Law and Practice”,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42.

8) 감축대상이 되는 6가지 주요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CO<sub>2</sub>)를 비롯하여 아산화질소(N<sub>2</sub>O), 메탄(CH<sub>4</sub>), 불화탄소(PFC), 불화유황(SF<sub>6</sub>), 수소화불화탄소(HFC) 등이 포함된다.

9)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교토의정서”, 유넵프레스, 2002, 11쪽 이하

10) 전계서, 28쪽 이하

4) 교토메커니즘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였으며, 그 이행에 동반될 수 있는 비용 문제 등 그 과장을 감소키 위해서 교토메커니즘(Kyoto Mechanisms)으로 명칭되는 배출권거래(Emission Trading), 청정개발체제(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등 3개 제도를 도입하였다.<sup>11)</sup>

	배출권거래(ET)	공동이행(JI)	청정개발체제(CDM)
근거	교토의정서 제17조	교토의정서 제4조	교토의정서 제12조
참여자	기후변화협약상 선진국 (Annex I 국가)	교토의정서상 감축의무를 받은 선진국 (Annex B 국가)	선진국 및 개도국 모두 가능
시행시기	2008년	2008년	2000년
거래방식	국가간 잉여배출권 거래 (배출권 자체의 거래)	프로젝트에서 나온 배출감축단위(ERUs)를 이전하거나 취득하는 거래	개도국의 프로젝트에서 나온 공인배출감축(CERs)을 배출
단위	할당된 배출권(AAUs; Assigned Amount Units)의 일부분	배출감축단위 (ERUs; Emission Reduction Units)	공인배출감축 (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주요 논쟁사항	보조성 (Supplementation), 거래시장 형태, 부정거래 및 정보공개 문제 등	추가감축 (Additionality), 기준배출량(Baseline) 설정 문제등	추가감축 (Additionality), 기준배출량(Baseline) 설정 문제등

11) David Freestone & Charolotte Streck 전계서 p12, 176.

## 5) 탄소시장 이해

“시장’의 의미는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정책에 의해 고정되기보다는 시장 내 탄소배출권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됨을 의미한다. 이는 재화나 서비스 생산 비용에 기후변화 유발로 인한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반영시키는 한 방식으로, 정책에 의해 비용 규모가 결정되는 탄소세(carbon tax)와는 대비된다.”<sup>12)</sup>

소위 “cap-and-trade”라고 불리는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또는 국가 연합 단위에서는 할당량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할당량시장의 운영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기간을 설정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배출총량 소위 ‘cap’이 설정된다. 이후 배출총량은 온실가스 배출원인 의무 감축 대상에 할당량(allowance) 타입으로 무상 지급 및 경매되며 감축 주체는 해당년도 동안 감축의무 위행을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sup>13)</sup>

## 6)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탄소배출권(Certified Emission Reduction(CER), 공인인증감축량 또는 인증감축량)이란 CDM 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인 것을 유엔의 담당기구에서 확인해 준 것을 말한다. 이러한 탄소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에 의해서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다. 2015년 10월 30일 현재 탄소배출권 1톤의 가격은 8.64유로다.<sup>14)</sup>

12) 안승광, “탄소배출권과 탄소시장”, 『기업지배구조리뷰』,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6쪽 이하

13) Id.

14) EEX, European Emission Allowances, Global Environmental Exchange, <https://www.eex.com/en/market-data/emission-allowances/spot-market/european-emission-allowances#!/2015/10/30>(최종검색: 2015. 10. 25)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European Union Allowance)은 일반적인 시장의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른 가격변동이 있다. 한편, 청정개발체제(CDM)을 통하여 취득한 배출권(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의 경우 현재 0.1~0.2유로에 거래가 이루어진다. 공동이행제도(JI)를 통하여 취득된 배출권(EUR)은 0.05~0.1유로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가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면 유엔에서 이를 심사·평가해 일정량의 탄소배출권(CER)을 부여한다. 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청정 개발 체제(CDM) 사업이라고 한다.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 스스로도 CDM 사업을 실시해 탄소배출권을 얻을 수 있는데, 한국은 이에 해당한다.<sup>15)</sup>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의무당사국들은 1990년도 기준으로 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8년에서 2012년까지 평균 5%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감축분의 탄소배출권은 매매가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기업들은 기술개발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배출량이 적은 국가의 조림지 사업업체로부터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sup>16)</sup>

#### 7) Credit시장 및 CDM 사업의 이해

가장 대표적인 탄소배출권 크레딧(Credit)시장은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CDM시장과 JI시장을 들 수 있다. CDM시장의 크레딧(credit)을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이라고 부르며, JI시장의 크레딧(credit)을 ERU(Emission Reduction Unit)라고 부른다.

이들은 통상 EUA(European Union Allowance)보다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며, EU ETS 등과 같은 할당량시장에서 EUA와 같은 할당량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온실가스 감축 주체의 비용에 관한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sup>17)</sup> 크레딧의 경우 CDM사업을 통한 CER의 발행 및 거래량이 JI사업을 통한 ERU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며, 많은 국가들이 CDM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

있다.

15) [https://ko.wikipedia.org/wiki/%ED%83%84%EC%86%8C\\_%EB%B0%B0%EC%B6%9C%EA%B6%8C](https://ko.wikipedia.org/wiki/%ED%83%84%EC%86%8C_%EB%B0%B0%EC%B6%9C%EA%B6%8C)(최종검색: 2015. 10. 25)

16) Id.

17) 안승광, “탄소배출권과 탄소시장”, 『기업지배구조리뷰』,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9쪽 이하

## 2. EU 차원: EU Effort Sharing Decision

대한민국은 금년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EU는 우리보다 10년 일찍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5년 현재 EU내에서는 31개국이 탄소배출권거래에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규모의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을 운영하고 있다.<sup>18)</sup>

“EU Effort Sharing Decision”은 2008 EU 기후 및 에너지 패키지의 일환으로 합의되어졌으며, 2013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영국의 목표는 2013년에서 2020년 매년 탄소배출을 감축하여, 2005년 수준의 16%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이다.<sup>19)</sup>

## 제 2 절 영국 온실가스 배출 일반

### I. EU ETS

EU배출권 거래 시스템(EU ETS)은 영국을 포함하는 유럽의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핵심 시스템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 자체를 줄이면서, 기업이 탄소배출 감소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방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독자적이며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sup>20)</sup>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기업의 경쟁력 저하 등의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탄소배출권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을 포함하는 EU 회

---

18) 2012년 기준으로,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량 107억 3000만 톤 가운데 72%에 해당하는 77억 2000만 톤이 EU 시장내에서 거래되고 있다. 박세정, “유럽의 10년 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탄소 배출권거래 시장”, 『경제신문 디지털타임스』, 2015. 4. 17.

19) Department of Energy & Climate Change, “2014 UK Greenhouse Gas Emissions-Provisional Figures”, 26 March, 2015, p17

20) 주한 영국대사관 기후변화과, <http://ukembassyclimate.tistory.com/category/기후%20변화%20대응%20정책/영국의%20정책> (최종검색: 2015. 10. 25)

원 국가는 동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다른 국가에 비해 경제적인 경쟁력 약화는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후변화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점임을 고려할 때, 영국은 보다 광범위한 정도의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 영국은 선진국의 일원으로 탄소배출권거래 제도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sup>21)</sup>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시키면서, 반면 경제성장 결과를 낳는 “경제와 온실가스의 탈동조화”가 EU 배출권 거래제의 가장 큰 성과라는 전문가 분석이 있다.<sup>22)</sup> 1990~2012년까지 EU 28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 감축하면서도 국내총생산(GDP)은 오히려 45% 증가시킨바 있다.

EU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탄소배출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Green Paper(2001) 및 Commission Proposal(2002)을 통해서이다. 3단계 접근을 통해 탄소배출권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phase 1) 기간은 2005년에서 2007년까지로 “pilot phase”이다.<sup>2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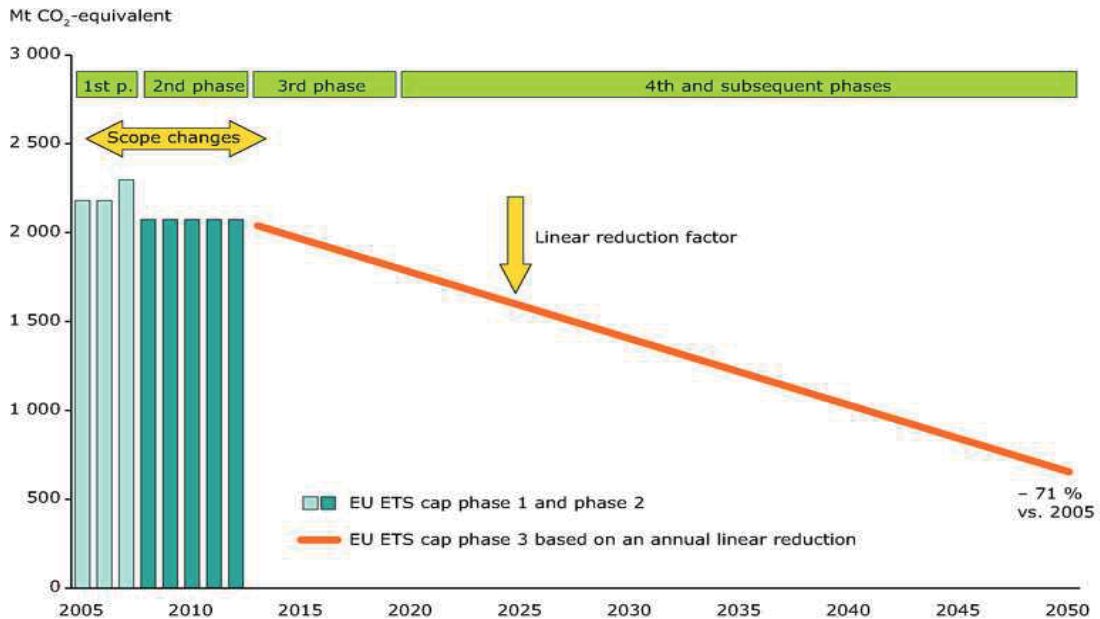
---

21) Id.

22) 박세정, “유럽의 10년 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탄소 배출권거래 시장”, 『경제신문 디지털타임스』, 2015. 4. 17.

23) <http://www.eea.europa.eu/data-and-maps/figures/perspective-on-eu-ets-cap>(최종검색: 2015. 10. 25)

[표 EU ETS 도표]<sup>24)</sup>



유럽연합(EU)의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ETS)는 2003년 10월 채택된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지침(Directive 2003/87/EC)을 통해 채택된 EU 회원국 간 공통의 감축정책이다.

EU-ETS 정책은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시범단계로서 2005년~2007년까지, 2단계는 본격적인 감축단계로서 2008년~2012년까지, 3단계는 감축 목표 감축단계로서 2013년~2020년까지이다.

주요 참여업종은 발전, 정유, 시멘트, 철강 등으로 약 12,521개 시설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 중 발전업종이 약 81,176개(65%)로 발전업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sup>25)</sup>

현재 제3단계에서는 2005년 배출량 대비 21%(2020년 시점) 감축을 목표로 하되, 2013년 이후 2008년~2012년 기간 할당량의 중간 값을 기준으로 매년 1.74%씩 감축하도록 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석유화학 제품, 알루미늄 등 다수 부문이 추가되었는데, 특히 EU 온실가스의

24) Id.

25) 강승진,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도입, 합리적 대안은 무엇인가?”, 『바른 사회 시민회』 토론회 자료집, 2014. 8. 21



약 3%를 차지하고 있는 항공 부문이 추가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특징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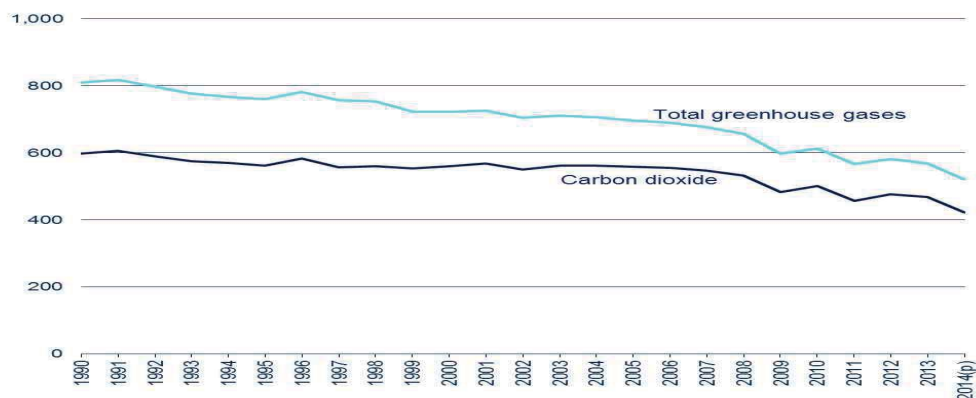
## II. 영국 온실가스 배출 현황

[영국 온실가스 배출 도표]<sup>26)</sup>

	2013	2014(P)	Change
Total greenhouse gas emissions	568.3	520.5	-8.4%
Carbon dioxide emissions	467.5	422.0	-9.7%

영국의 최근 온실가스 배출 현황은 다음 표를 참조할 수 있다.

[표: 1990년-2014년 사이 Carbon dioxide 및 Total greenhouse gases 배출현황]<sup>27)</sup>



출처: 영국 환경 및 기후 변화부

26) Figure 1: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UK and Crown Dependencies 1990-2014, (MtCO<sub>2</sub>e),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16810/2014\\_stats\\_release.pdf](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16810/2014_stats_release.pdf) (최종검색: 2015. 10. 25)

27) Department of Energy & Climate Change, “2014 UK Greenhouse Gas Emissions, Provisional Figures”, March 26, 2015, p5



## 제 3 장 탄소배출권거래 관련 영국 민사소송 사례 검토

### 제 1 절 영국 민사소송 절차 일반

#### I. 민사소송의 목표

재판에 있어서 절차적 정의(Due Process) 확보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타협불가하며 재판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다. 영국 민사소송 절차에 있어 절차의 복잡성 및 비용 및 시간의 과다 소비는 상기 두 가지 재판에 있어 본질적인 가치 확보에 다소 장애로 작동하고 있었으며, 결국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를 보완키 위해, 영국법원은 20세기 후반기에 있어 영국민사소송법에 있어 가장 큰 변화를 주는 작업을 1994년 3월부터 종래의 민사재판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방식부터 출발하여 개혁을 진행하는 노력을 하였다.<sup>28)</sup>

1994년 Lord Chancellor는 Lord Woolf에게 종래 민사소송규정들의 통합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지시했다. 1996년 6월 26일 Lord Woolf는 “Access to Justice Report 1996”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sup>29)</sup> 동 연구보고서에는 민사소송상의 정의(justice)에 접근키 위한 민사정의시스템(civil justice system) 확보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담고 있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sup>30)</sup>

---

28) Gary Slapper & David Kelly, “The English Legal System(15th edition, 2014-2015)”, Routledge, p233

29) Catherine Elliott & Frances Quinn, “English Legal System(Sixth edition)”, Pearson Education Limited, 2005, p.415

30) Lord Woolf, “Access to Justice Report”, 1996.

- (a) be just in the results it delivers;
- (b) be fair in the way it treats litigants;
- (c) offer appropriate procedures at a reasonable cost;
- (d) deal with cases with reasonable speed;
- (e) be understandable to those who use it;
- (f) be responsive to the needs of those who use it;
- (g) provide as much certainty as the nature of particular cases allows; and
- (h) be effective: adequately resourced and organised.".[2] (Italics in the original.)

첫 번째는 민사절차와 “시간”에 관한 쟁점이었다. 특정 단계별로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확정하는 작업과 Disclosure 및 전문가증거(expert evidence) 제한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sup>31)</sup> 시간에 관한 문제 해결을 통해 신속한 재판이 가능케 해야 한다는 쟁점이 제기되었으며, 동 보고서에서 두 번째 중요한 쟁점은 시간,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시간비용측면에서의 소송비용 통제였다.

동 보고서에는 Lord Woolf의 제안을 이행할 수 있는 실무법제 초안을 포함하고 있었다.<sup>32)</sup> Lord Woolf 및 그의 위원회의 제안이 개혁의 기초가 되었고, 중점 개혁사항은 동 법 part 1 “Overriding Objective” 타이틀 하에 포함되어 있다.

#### 1.1

- (1) These Rules are a new procedural code with the overriding objective of enabling the court to deal with cases justly and at proportionate cost.
- (2) Dealing with a case justly includes, so far as is practicable -
  - (a) ensuring that the parties are on an equal footing;
  - (b) saving expense;

31) Id.

32) 논의 대상인 주요 사항으로는 “These rules: granted wide management powers to the court proposed that cases be allocated to one of three tracks depending on their nature, limiting or requiring specific actions; and introduced the concept of proportionality to the costs regime.” Civil Procedure Rules (Woolf Reforms), [https://en.wikipedia.org/wiki/Civil\\_Procedure\\_Rules](https://en.wikipedia.org/wiki/Civil_Procedure_Rules)(최종검색: 2015. 10. 24)

- (c) dealing with the case in ways which are proportionate -
  - (i) to the amount of money involved;
  - (ii) to the importance of the case;
  - (iii) to the complexity of the issues; and
  - (iv) to the financial position of each party;
- (d) ensuring that it is dealt with expeditiously and fairly; and
- (e) allotting to it an appropriate share of the court's resources, while taking into account the need to allot resources to other ca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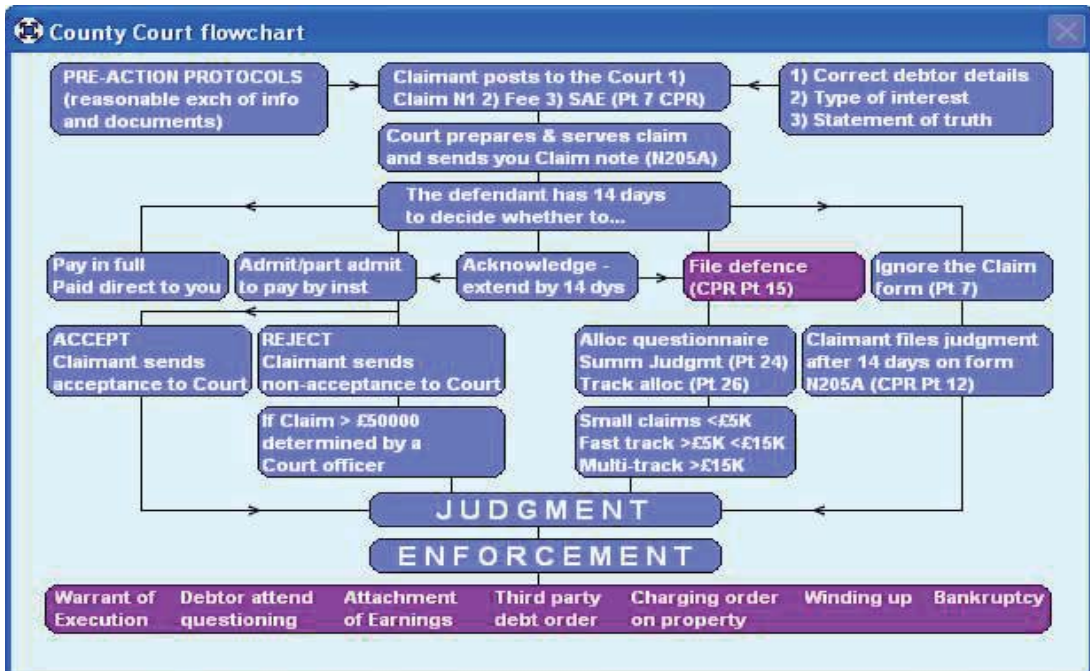
1.2

The court must seek to give effect to the overriding objective when it -

- (a) exercises any power given to it by the Rules; or
- (b) interprets any rule.

The rules are written to be intelligible not just to lawyers but to litigants in person also.

[표: 영국 민사소송 절차]<sup>33)</sup>



33) County court civil litigation process, <http://www.civilprocedurerules.co.uk/flcpc.htm>(<sup>최</sup>종검색: 2015. 10. 24)

## II. 소송절차

### 1. Pre-action Protocols(제소전 행위규범)

#### 1) 제도의 의미

상기한바와 같이 정식재판으로 인한 비용 및 시간소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Pre-action protocols을 들 수 있다. 동 제도는 제소전 화해를 통한 민사분쟁상의 해결점을 모색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분쟁당사자간의 증거 및 정보교환을 유도하고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당사자간의 민사분쟁이 소송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상기한바와 같이 영국 민사소송절차의 개혁을 이끈 Lord Woolf는 “Access to Justice Report”에서 민사정의(civil justice)에 다가가는 방법으로 분쟁이 어디에서 진행되든 소송(litigation) 없는 분쟁해결을 강조함으로써 pre-action protocols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sup>3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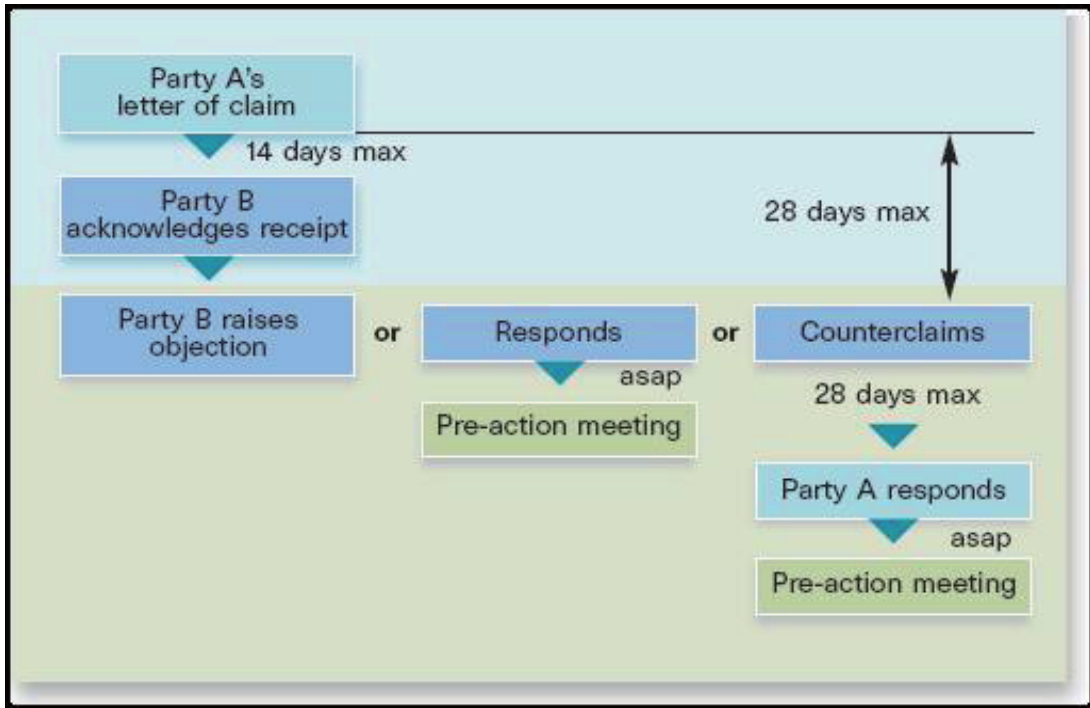
또한, pre-action protocols이 민사소송법에 포함됨에 따라 제소전 단계 역시 소송의 한 과정으로서 위치하게 되었다. 다시말해, 종래의 당사자간 자율영역에 pre-action protocols로 법원이 개입함으로써 제소전에 분쟁당사자간의 협상을 강제토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sup>35)</sup>

---

34) “My approach to civil justice is that disputes should, wherever possible, be resolved without litigation.” Lord Woolf, Access to Justice 보고서

35) CPR - Pre-Action Protocols

[표: 영국 Pre-action Protocols 절차]<sup>36)</sup>



1999년에 발효된 영국 민사소송규칙(Civil Procedure Rule, 이하 ‘CPR’로 표시)은 철저히 지식을 발굴하고 이러한 민사소송규칙에서의 ‘제소전 행위규범’이란 아직 소송이 개시되지 않은 청구와 관련하여 준수되어야만 하는 “최적의 실무관행(best practice)”을 성문화한 것으로 정의된다.<sup>37)</sup> 모든 유형의 사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제소전 행위 규범은 처음부터 입안하지 않았으며 특정 유형의 사건들에만 개별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시행결과에 따라서 기존의 행위규범도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적용되는 사건분야도 추가되는 추세이다.

36) <http://www.thenbs.com/topics/ContractsLaw/articles/disputeResolution.asp>(최종검색: 2015. 10. 25)

37) Ministry of Justice(UK), “UK, CPR-Pre-Action Protocols”, <https://www.justice.gov.uk/courts/procedure-rules/civil/protocol>(최종검색: 2015. 10. 25)

전면적 민사소송규칙 개정의 골격을 형성했었던 울프최종보고서(Woolf Final Report)에서는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가 분쟁을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장려되었다. 이 때문에 몇 가지 방안이 제안되고 있으나 그 핵심으로 제소전 행위규범이 제안되었고, 1999년 민사소송규칙의 일부를 이루게 되었다.

## 2. 소송 청구 금액에 따른 민사소송 분류

민사소송의 가장 일반적인 절차로 원고가 소장(claim form)을 작성 후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시키면 당해 민사소송이 시작된다. 소송청구금액은 민사소송 유형 분류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sup>38)</sup>

소송청구금액에 따라 재판부 구성 및 절차가 달라진다. 분류기준 금액은 일반적으로 청구금액 5,000, 15,000 파운드이다. 5,000 파운드 이하의 사건들은 소액소송절차(small claims tacks)<sup>39)</sup>로 분류되며, 구역법원에 소속된 구역법관(district judges)이 재판을 진행한다. 5,000파운드 초과 15,000 파운드 사건은 속결절차(fast track)로 분류가 가능하며 구역법원의 구역법관 또는 순회법관이 재판을 한다.<sup>40)</sup>

청구금액 기준으로 15,000 초과 사건의 경우 복합절차방식(multi-track)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사건의 경중에 따라 재판참여법관을 분류할 수 있다. 중요 사건의 경우 고등법원(The High Court of Justice)이 재판을 진행하며, 상대적으로 단순 사건의 경우 구역법원의 순회법관이 재판을 진행한다. High Court는 직역하면 고등법원으로 번역될 수 있으나, 한국의 항소법원인 격인 고등법원과 다르다. 재판 수행 기능은 한국의 민사지방법원과 동일한데, 일정 이상의 분쟁 금액 및

38) Gary Slapper & David Kelly, "The English Legal System(15th edition, 2014-2015)", Routledge, p243

39) 대부분의 영국에서 처리되는 다수의 민사사건은 소액사건이다. <http://www.parliament.the-stationery-office.co.uk/pa/cm200506/cmselect/cmconst/519/519we02.htm>(최종검색: 2015. 10. 24)

40) Civil Procedure Rules 1998



특허분쟁, 상표분쟁, 명예훼손 등 특정 형태의 분쟁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곳이 High Court이다.

소장이 접수되면 해당법원은 당사자인 피고에게 사안을 고지하고 답변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원에 접수된 사건 소장부분을 동 피고에게 송달해야 한다.

민사소송의 참여변호사는 일반적으로 Barrister이다. Barrister(법정변호사)는 Solicitor(사무변호사)와 더불어 영국의 대표적인 변호사의 유형이다.<sup>41)</sup> Barrister는 주로 법정에서 소송 등 송무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영국 법정 영화에서 형사 피고인을 변호하며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Barrister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다수의 Barrister들이 형사사건에 많이 참여하지만 민사사건을 포함하는 민사소송 법정에서도 Barrister를 보는 것이 어렵지 않다. 다수의 Barrister들은 독립적으로 실무에 종사하며, Bar Council이 이들을 관리하고 있다. Bar Council은 Barrister들의 이익을 보호하기도 하며 반면, 감독자로서 Barrister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sup>42)</sup>

Solicitor는 일반적으로 사무변호사로 번역하고, 영국의 변호사 제도는 Barrister와 Solicitor로 나뉘지만, 대부분은 Solicitor로 일하고 있다. Solicitor는 Law Society에 등록할 수 있고, 동 협회는 1845년에 결성되어 Solicitor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하고 있다.

상기한 Barrister의 역할은 법정변호사로서의 역할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나, Solicitor의 경우 계약서 검토 등 문서 검토 작업에 많이 종사하며, 유언장 작성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

다수의 Solicitor는 단독 또는 다른 Solicitor와 공동으로 Solicitor법률회사를 세워 일하거나, 런던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초대형 다국적로펌(global law firm)에 고용되어 국제법무에 종사하기도 한다.

---

41) Catherine Elliott & Frances Quinn, “English Legal System(Sixth edition)”, Pearson Education Limited, 2005, p148-162

42) Id.

### Ⅲ. 영국 민사소송 주요 조항

CPR(Civil Procedure Rules)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Court of Appeal, High Court of Justice 및 County Courts의 민사소송에 적용되는 법규이며 “The Rules of the Supreme Court” 및 “the County Court Rule”을 대체해서 1999년 4월 26일 이후에 개시된 모든 사안(cases)에 적용되는 법규이다.

영국 민사소송법은 88개의 part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은 목차로 구성이 되어있다.

영국 민사소송법(CPR- Rules and Direction)<sup>43)</sup>

- Part 1. 목적
- Part 2. 규칙(rules)의 적용 및 해석
- Part 3. 법원의 케이스 관리 권한
- Part 4. 문서양식
- Part 5. 법원 문서(Court Documents)
- Part 6. 문서의 서비스(Service of Documents)
- Part 7. 절차의 시작하는 방법 - 클레임 폼(The Claim Form)
- Part 8. 클레임 대체 절차 (Alternative Procedure for Claims)
- Part 9. 특정클레임에 대한 대응 - 일반(general)
- Part 10. Acknowledgement of Service
- Part 11. 법원관할에 관한 다툼 (Disputing the Court’s Jurisdiction)
- Part 12. Default Judgement
- Part 13. Setting Aside or Varying Default Judgment
- Part 14. Admissions
- Part 15. 디펜스 및 답변(Defence and Reply)
- Part 16. 케이스 진술
- Part 17. 케이스 진술에 대한 개정(Amendments to Statements of Case)
- Part 18. 추가적 정보
- Part 19. Addition and Substitution of Parties



- Part 20. 카운트크레임 및 다른 추가적인 크레임
- Part 21. 아동 및 보호되는 당사자
- Part 22. 진실에 대한 진술(Statements of Truth)
- Part 23. 법원 명령을 이행에 관한 일반적 규정
- Part 24. 약식판결(Summary Judgement)
- Part 25. 보전조치(Interim remedies)
- Part 26. 케이스 메니지먼트 - 예비 단계
- Part 27. 소액 클레임 트랙(The Small Claims Track)
- Part 28. 패스트 트랙(The Fast Track)
- Part 29. 멀티 트랙(The Multi-track)
- Part 30. 트랜스퍼(Transfer)
- Part 31. 공개 및 문서의 조사
- Part 32. 증거
- Part 33. 증거 관련 기타 규정(Miscellaneous Rules about Evidence)
- Part 34. 증인, 선서증언 및 외국법정에서 증거
- Part 35. 전문가 및 감정사
- Part 36. 화해 제안
- Part 37. 법원에 대한 지불에 관한 기타 규정
- Part 38. 불연속(discontinuous)
- Part 39. 청문 관련 기타 조항
- Part 40. 판결, 명령, 토지 판매 등
- Part 41. 손해
- Part 42. 변호사 변경(Change of Solicitor)
- Part 43. 삭제
- Part 44. 비용에 관한 일반적 규정
- Part 45. 고정 비용
- Part 46. 특정사안에서의 비용
- Part 47. 비용부과 절차 및 Default Provisions
- Part 48. 법률지원 등
- Part 49. 스페셜리스트 절차
- Part 50. 스케줄 지원
- Part 51. 섭외적인 절차(Transnational Arrangements) 및 Pilot schemes
- Part 52. 항소

- Part 53. 명예 훼손 클레임
- Part 54. 사법심사 및 법조항 심사
- Part 55. 소유에 관한 클레임
- Part 56. 토지 임대인 및 임차인 클레임 및 토지에 관한 각종 조항
- Part 57. 유언검증, 상속 및 사망추정
- Part 58. 상사법원(Commercial Courts)
- Part 59. Mercantile Courts
- Part 60. 기술 및 건축 법원 클레임
- Part 61. 해상관련 클레임
- Part 62. 중재 클레임
- Part 63. 지적재산권 클레임
- Part 64. 부동산, 신탁, 자선단체
- Part 65. 반사회 행위 및 괴롭힘 관련 절차
- Part 66. Crown proceedings
- Part 67. 송무변호사 관련 절차
- Part 68. 유럽법원 참조
- Part 69. Receiver 임명에 관한 법원의 권한
- Part 70. 판결 및 명령 강제이행에 관한 일반조항
- Part 71. 판결상 채무자로 부터의 정보 취득을 위한 명령
- Part 72. 제3자 채무 명령(Third Party Debt Orders)
- Part 73. 명령부과, 명령정지 및 정지통보
- Part 74. 타 법률관할(Different Jurisdictions)에서의 판결 이행
- Part 75. 교통단속(Traffic Enforcement)
- Part 76. 테러방지법(Prevention Terrorism Act 2005) 상 절차
- Part 77. 형사정의 지지 조항
- Part 78. 유럽 절차
- Part 79. 반테러법(Counter-Terrorism Act 2008) 상 절차
- Part 80. 테러방지 및 조사방법법(Terrorism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Measures Act 2011) 상의 절차
- Part 81. 법정모독 관련 적용 및 절차
- Part 82. 폐쇄물 관련 절차
- Part 83. 영장 - 일반조항
- Part 84. 물품 통제에 의한 강제

Part 85. 통제된 물품 및 압류 품에 대한 클레임

Part 86. 이해관계자 클레임 및 어플리케이션

Part 88. 반테러 및 안보법(Counter-terrorism and Security Act 2015) 상 절차

## 제 2 절 탄소배출권거래 관련 영국 민사소송 사례 검토

### I. 서 설

EU ETS 관련 소송은 European Court of First Instance(“CFI”) 및 European Court of Justice(“ECJ”)에서 다수 진행되었으나, 영국 국내에서 탄소배출권 관련 소송의 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EU ETS 케이스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 데, 다음과 같은 기준을 들 수 있다.<sup>44)</sup>

- 1) Directive 2003/87 9항에 위원회(Commission)의 국가할당계획(NAP)에 관한 검토 권한의 범위에 관한 케이스
- 2) EU ETS가 적용되는 시설의 운영자가 Phase I 또는 II기의 국가 할당에 대한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 3) EU ETS 자체의 불법성에 대한 이의제기

영국에서 탄소배출권관련 초창기 소송의 대표적인 사례는 Cemex UK Cement Ltd v. Department for the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sup>45)</sup>를 들 수 있다. 동 사안의 원고는 UK Cement Ltd였으며 피고는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FRA)였다.

43) <https://www.justice.gov.uk/courts/procedure-rules/civil/rules>(최종검색: 2015. 10. 25)

44) James Maurici, “Litigation and the EU Emissions Trading Scheme”, 5 March, 2009

45) Cemex UK Cement Ltd v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and others, [2006] EWHC 3207 (Admin)

동 사안은 배출권 할당에 있어 평등원칙 또는 비차별 원칙의 실질적 의미에 관한 담론을 다루었다. 원고 Cemex는 영국 Rugby Town에 위치한 시멘트 공장으로, 영국 환경식품농림부를 대상으로 “2008-2012 영국 국가할당계획 (UK National Allocation Plan 2008-2012)”에 따른 시멘트 공장에서의 이산화탄소배출권 할당에 관해 사법 심사를 요청하였다.<sup>46)</sup>

개별회원국은 EU ETS 이행의 의무가 있으며, Phase II 기간 동안의 개별 회원국가의 국가할당계획(national allocation plan)은 그 기간 동안 허가되는 총량을 명시해야 하며, 그 제도에 따라야 하는 시설 가운데 할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시해야 한다. Phase II 관련 최종 할당 결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만들어져야 하며, DEFRA는 할당 방식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는 문서를 발급했었다.

Phase I 기간 동안 취합된 정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DEFRA는 Phase II에 있어 할당결정 제안 방식을 변경하였으며, Phase I 기간 동안 관련 배출을 계산할 때, DEFRA는 “commissioning” rule을 시멘트 및 발전 섹터에 적용하였다.

원고는 2005년 12월 commissioning rule이 Rugby에 위치한 동 원고의 공장에 적용되는 것은 심각하게 불리한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철회를 DEFRA에 요청했으며, 대체방법을 제안했었다. 원고의 Rugby 공장은 commissioning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허가량을 계산하기 위해 수집한 배출데이터는 완전히 작동하고 있는 공장보다도 낮은 수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할당량이 너무 작다고 원고는 판단하였다. 원고는 Phase II에서의 할당이 EC의 평등원칙 또는 비차별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으며, Phase II에서 할당방식이 수정되어야 하며, commissioning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수 설비에 불리하게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

46) Id.

앞에서는 영국 탄소배출권 관련 초기 대표적인 소송 사안을 검토해 보았다. 영국에서 진행된 탄소배출권 관련 대표적인 소송은 당사자 및 판례번호는 아래 박스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다수의 소송이 민간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의 형태를 띠고 있다. 제2절에서는 아래의 목록 중 탄소배출권 관련 민사소송에 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당사자	사건번호	유형
1	Cemex UK Cement Ltd) v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and others	[2006] EWHC 3207 (Admin)	행정
2	Ineos Manufacturing Scotland Ltd v Grangemouth CHP Ltd and another	[2011] EWHC 163 (Comm)	민사
3	Viridian Power Ltd and others v Commission for Energy Regulation	[2011] IEHC 266	행정
4	Armstrong DLW GmbH v Winnington Networks Ltd	[2012] EWHC 10 (Ch)	민사
5	Air Transport Association of America and others v Secretary of State for Energy and Climate Change	[2012] All ER (EC) 1133,	행정
6	Deutsche Bank AG v Total Global Steel Ltd	[2012] EWHC 1201 (Comm)	민사
7	The Queen on the application of Swiss international airline AG v. Secretary of State for climate change and energy & Environment Agency	[2014] EWHC 630 (Admin)	행정
8	CF Partners (UK) LLP v Barclays Bank Plc and another	[2014] EWHC 3049 (Ch)	민사

	당사자	사건번호	유형
9	The Queen on the application of total lindsey oil refinery limited, et al v. Secretary of state for energy and climate change & Department for energy and climate change	[2014] EWHC 4290 (Admin)	행정
10	Swiss International Air Lines AG v Secretary of State for Energy and Climate Change and another	[2015] EWCA Civ 331	행정

## II. Armstrong v. Winnington

※ 아래 영국법원 판결문 “Armstrong DLW GmbH v. Winnington Networks Ltd, [2012] EWHC 10(Ch)”의 주요 내용의 번역은 저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번역한 것으로, “영국 탄소배출권거래제 관련 민사소송의 최근 동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키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으로, 판결문 분석 및 추가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작업임을 밝힌다.

### 1. 사실관계<sup>47)</sup>

2011년 10월 17일 영국 High Court에서는 배출권(EU Allowances) 사이버 절도로 발생한 손해 관련 민사소송 첫 재판이 진행되었다. 동 소송은 일개 소송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이는 동 재판의 결과가 탄소배출권 시장에 폭넓은 의미 부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고는 Armstrong DLW GmbH(이하 Armstrong)였으며, Winnington Networks Limited(이하 Winnington)가 동 민사소송의 피고이다.

2010년 1월 28일 독일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등록계정(German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Scheme Registry)의 원고 Armstrong의 탄소 배출 계정에 서 영국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등록계정(the UK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Scheme Registry)으로 탄소배출권의 이동이 있었다. 원고 Armstrong 소속 직원이 독일인 계정으로부터 사기이메일(phishing email)을 받았으며, 동 직원은 기망이메일에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기망자에게 동 회사의 배출권

계정 관련 정보를 노출시켰다. 동 회사의 계정정보는 피싱메일을 작성한 기망자에 의해 사기적인 거래에 이용되어졌다.

따라서 배출권 거래가 정당한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기망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기망자는 원고 Armstrong사의 배출권 1,000EUA를 덴마크 등록계정으로 불법 이전시켰으며, 21,000EUA의 배출권을 피고(defendant)의 영국 계정으로 이전시켰다.

피고는 Winnington Networks Limited로 영국을 기반으로 배출권을 거래하는 회사였다. Zen Holdings Limited사는 기망에 의해 탈취된 21,000 EUA의 합법적인 소유자로서 피고 Winnington에게 267,645파운드에 매각했으며, Winnington은 거의 실시간으로 중개인을 통해 제3자에게 동 EUA를 판매함으로써 4,855파운드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

## 2. 사건의 배경<sup>48)</sup>

### 1) 당사자: 원고(Armstrong) 및 관련 피고용인

원고 Armstrong은 독일에서 등록된 회사이다. PVC 및 리놀륨 마루 덮개(Linoleum floor coverings)를 생산하는 회사이며, 미국 상장회사(US listed company)인 Armstrong World Industries Inc가 소유한 그룹회사의 일원이다. 동 회사는 Delmenhorst 및 Bietigheim-Bissingen에서 두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양 공장은 발전시설을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 Armstrong사의 피고용인(employee) Herr Heinrich Leiber는 모든 중요한 시기에 탄소배출권 거래계좌(accounts) 관리에 관한 책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 2) 당사자: 피고(Winnington) 및 관련 피고용인

피고 Winnington은 영국 크루(Crewe)시에 집행부가 있는 영국에서 등록된 회사이다. 동 회사는 고도기술을 요구하는 제품의 공급 및 유통 등의 비즈니스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이다.<sup>49)</sup> 피고 Winnington이 소속된 그룹회사는 대략 오천만 파운드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30명 정도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Adrian John Sumnall은 Winnington사의 전무이사(managing director)로서 일해왔다. Neil Pursell은 회계사이며 회계법인의 전직 파트너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Winnington의 이사(director)였으며, 재무 및 자산실사(due diligence)에 관



한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Paul Byatt은 사건발생 당시 Winnington의 유럽구매 담당이었다.

### 3) EC Directive 2003/87/EC가 적용되는 사안

EU 탄소배출권거래제(EU Emissions Trading Scheme) 시행에 따라 탄소배출권(EUAs)<sup>50)</sup> 거래가 허용되어졌다.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위원회의 지침인 EC Directive 2003/87/EC에 의거 탄소배출량 8%를 감축해야할 의무가 있다.<sup>51)</sup> 제 2장에서 자세히 검토한 것처럼, 교토의정서에 따른 감축 목표를 충족키 위해, EU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였다. ETS는 2005년 1월부터 유효한 것이었다. EU내에 이산화탄소 배출 관련해서 설정되어 있는 최소 기준치 이상을 배출하는 설비를 가진 모든 회사는 ETS에 참여하여야 하며, 개별 회원 국가는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치를 결정한다.

### 4) EUA 할당 메커니즘

ETS가 적용되는 모든 탄소배출시설 운영업체에 매년 초 탄소배출권(EUAs)이 할당된다. 할당된 탄소배출권 크레딧을 포함하는 등록계정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Operator Holding Account”로 일반적으로 표시되며, EU 회원국에서 국가 등록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sup>52)</sup>

EU ETS 피적용 대상 개별 운영자들은 자신들의 설비에서의 CO<sub>2</sub>배출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며, 규정준수 년도(compliance year) 끝 무렵에 CO<sub>2</sub>배출에 관한 외부감사가 진행된다. 동 감사를 통해 같은 연도 동안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수준을 결정한다.

작업자(operator)가 이행의무 충족을 위한 충분한 EUAs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허용치 초과 CO<sub>2</sub>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된다. 반면, 배출 목표의무를 충족시킨 후 할당분 중 남은 부분은 이월하여 다음 년도에 사용할 수 있다.

### 5) EUA 법적 성격에 관한 재판부의 입장

판결에서는 재판부는 탄소배출권(EUA)의 성격을 민사소송상의 일반적인 “권리”로는 보고 있지 않다. 다른 사람에게 상호관계적 의무를 부과하는 권리가 아니더라는 것이다.<sup>53)</sup>

이러한 의미에서 탄소배출권 소지자에게 CO<sub>2</sub>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는다. 이는 기껏해야 배출할 수 있는 허가(permission) 또는 자유(liberty),



아니면, 소지자에게 배출 금지 및 벌금부과로부터 면제시켜줄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하고 있다.<sup>5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배출권 소지자는 특정 레벨정도 이상의 CO2 배출을 금지하거나, 만일 그러한 배출을 하였다면 벌금을 지불할 것이 최소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기망자(fraudster)는 탄소배출권(EUA)을 의제신탁(constructive trustee)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피고 Winnington은 신탁 재산 영수(receipt)에 대한 인식 책임이 있다. Winnington은 의도적이고 부주의하게 정직하고 합리적인 자가 취해야 할 조사를 회피하였다. Winnington의 인식은 탄소배출권이 원고 Armstrong 소유가 아닐 수 있는 위험부담까지 포함한다. 탄소배출권을 영수함에 있어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에 대한 이행실패에 따르는 책임은 Winnington이 Armstrong에게 져야하는 상황인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하였다.<sup>55)</sup>

#### 6) Armstrong 사건의 미래 영향에 관한 분석

“Knowledge=notice=bad faith(지식=인식=악의)” 공식이 성립한다는 견해가 있다.<sup>56)</sup> Morris J 판사는 동 사안의 협의의 사안 밖에 펼쳐질 수 있는 외부적인 과장을 간과했다는 분석이 있다.<sup>57)</sup>

47) Armstrong DLW GmbH v. Winnington Networks Ltd, [2012] EWHC 10(Ch).

48) Id.

49) Id.

50) 지침 ETS Directive 제3조에 의하면 “allowance(EUA)”의 의미는 특정기간동안 CO2 1tonne의 배출 허용을 의미한다.

51) Armstrong DLW GmbH v. Winnington Networks Ltd, [2012] EWHC 10(Ch)

52) Id.

53) Id. 탄소배출권의 법적성격에 관한 국내 연구물로는 박시원 & 한상운, 외국의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법적 쟁점 분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 최경진, 배출권거래에 관한 민사법적 연구, 가천법학 제6권, 2013.

54) Armstrong DLW GmbH v. Winnington Networks Ltd, [2012] EWHC 10(Ch)

55) Id.

56) Roger Best & Peter Zaman, “Armstong v Winnington - taking allowance(s) with the law”, Feb. 2012

57) Id.

Commission Regulation 1193/2011은 “Nature of allowances and finality of transactions(허가의 본질 및 거래의 종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제는 선의의 구매자 및 배출권 소유자는.... 배출권 소유권(title)을 취득해야 하며, 매도인(transferor)의 소유권에 포함되어 있는 어떠한 결함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58)</sup>

영국법상 선의의 취득자 방어(bona fides defence)는 동 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요건 충족시 배출권소지자가 행사할 수 있는 “positive right”로 변환되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피이전자가 그러한 결함에 대한 어떠한 인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어떠한 요건도 없다는 것이다.

#### 7) 사안의 요약 및 시사점

EU ETS의 개별 참여자에게 연간 탄소배출 할당이 주어지고, 허가 받지 않은 탄소 배출에 대해서는 톤당 €100의 벌금이 부과되며, 잉여 할당부분은 매매가 가능하다.

동 사안에서 Armstrong은 22,000톤의 배출권할당량(EUA)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10. 1. 28에 Armstrong은 이메일 피싱(email phishing)으로 인해, 같은 회사의 패스워드 및 어카운트 세부사항들의 노출이 되었었다.

이 세부정보는 신용사기에 이용되었다. 기망자(fraudster)는 Armstrong의 배출권할당 중 1,000톤을 Danish registry로 이동시켰으며, 나머지 21,000 할당량은 UK registry에 있는 Winnington account로 전송이 이루어졌다.

Winnington은 즉각적으로 중개인(broker)을 통해 제3자에게 탄소배출권을 판매하였으며, Winnington의 경우 판매자에 대한 적절한 체크

---

58) Commission Regulation 1193/2011, Article 37 (Nature of allowances and finality of transactions)

4. A purchaser and holder of an allowance or Kyoto unit acting in good faith shall acquire title to an allowance or Kyoto unit free of any defects in the title of the transferor.

(“Know Your Client”)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

피고(Winnington)가 거래된 가격 자체에는 의심을 품을 상황이 아니었고 이미 제3자에게 재판매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Armstrong은 Winnington을 상대로 절취된 배출권 할당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동법원의 판사는 Winnington이 기망자(fraudster)의 행위로 인한 손실을 감당해야 하며, Armstrong을 상대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판시. Winnington은 결과적으로 기망자와 거래행위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법원은 새로운 고객과 거래를 하는 당사자는 한걸음 물러서서, 거래 전체 흐름을 고려하며, 거래상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동 판사가 제기한 주요 논점 중 하나는 배출권의 법적성격. 양 당사자는 배출권할당이 일종의 재산적 성격을 고려하였고, 탄소배출할당이 개인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처리는 영국법상 신탁법에 의거해야한다. 동 사안은 배출권 시장에 참여한 당사자들에게 배출권할당의 의미를 더욱 확고히 제공할 수 있으며 탄소배출권 거래에 있어 사기부분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명확한 구도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III. CF Partners (UK) LLP v Barclays Bank Plc and another

※ 아래 영국법원 판결문 “CF Partners (UK) LLP v Barclays Bank Plc and another”의 주요 내용의 번역은 저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번역한 것으로, “영국 탄소배출권거래제 관련 민사소송의 최근 동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키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으로, 판결문 분석 및 추가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작업임을 밝힌다.

### 1. 사실관계<sup>59)</sup>

동 사안의 원고는 영국회사인 CF Partners이며, 피고는 Barclays Bank Plc이다. 분쟁의 핵심은 Barclays Bank가 고객인 재생에너지 거래 전문회사인 CF Partners사와의 비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를 이용하여 원고가 처음에 구매하려고 했던 스웨덴 탄소 거래회사인 Tricorona를 구매했는지 여부이다. 원고 CF Partners는 2008년도에 Tricorona를 매입을 고려한 원래의 이해관계자였고, CF Partners는 Barclays에게 탄소 거래회사를 매입할 수 있도록 금융 용자에 관한 조언을 하였었다.

CF Partners는 Tricorona의 잠재적 가치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교환할 때 은행과 비밀준수협정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피고 Barclays는 2010년에 Tricorona를 매입했으며, 원고 CF Partner가 2년전에 인수를 포기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원고 CF Parnter사는 단지 동사의 매입 계획을 지연시키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동 사안이 2012년도에 민사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 2. 법원결정

High Court의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얻은 비밀정보를 스웨덴 탄소 거래회사 Triocorona 매입을 위해 비밀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동 판사는 당사자 일방에게 배타적일 수 있는 계약상의 조항이라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3. 판결후 합의(settlement)

Barclays는 재생에너지 거래 전문회사인 원고 CF Partners와 합의하였다. 합의를 통해서 피고 Barclays는 CF Partner에 손해배상액 칠백팔십만 유로로 할 것을 동의하였다.<sup>60)</sup>

59) CF Partners (UK) LLP v Barclays Bank Plc and another, [2014] EWHC 3049 (Ch)

60) Linanna Brided, “Barclays Settles Misuse of Confidential Info Lawsuit with CF

### 제 3 절 시사점

배출권의 재산권 인정여부 및 법적성격은 배출권거래제 존치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배출권거래제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환경재에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여 시장 매커니즘을 기반으로 효율적 분배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 재산권성을 부인하게 된다면, 배출권을 보상 없이 박탈할 수 있게 되어 배출권거래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결국 배출권거래제는 지속되기 어렵다”라는 분석이 있다.<sup>61)</sup>

탄소배출권의 재산권적 성격이 강조된다면, 헌법 제23조 재산권 조항에 따른 일반적 법원칙 적용이 필요하다. 우리 헌법 제23조는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헌법상 재산권과 더불어 헌법상 평등권이 헌법소송의 쟁점으로 고려될 수 있다. 배출권할당에 있어 행정청의 처분이 불평등했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sup>62)</sup>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자의성의 법적한계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

탄소배출권은 배출권거래법의 제정에 따라 민사법적으로 독자적 재산권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법률의 규정에 의해 매입 및 매도가 가능한 재산권으로 볼 수 있다.<sup>63)</sup> 배출권거래법

Partners”, September 26, 2014

<http://www.ibtimes.co.uk/barclays-settles-misuse-confidential-info-lawsuit-cf-partners-1467284>  
(최종검색: 2015. 10. 23)

61) 최경진,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민사법적 연구”, 『가천법학』 제6권, 2013, 74쪽 이하

62) 안종오, “배출권거래제도의 소송상 쟁점에 관한 연구”, 『법학평론』, 2015, 239쪽 이하. 동 저자는 상기 논문을 통해 탄소배출권 관련 헌법소송, 행정소송, 형사법상 소송 쟁점을 분석하였다.

63) 최경진, 전제서, 74쪽 이하

및 하위 시행령 등에 배출권거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 법 및 하위 시행령이 우선 적용되겠으나, 동 법 및 동 시행령에서 기술하고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거래에 있어 일반적인 민사법 원칙의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영국의 경우 탄소배출권이라는 고유의 특성에 기인한 독창적인 유형의 민사분쟁은 찾기 힘들다. 민사거래의 대부분의 대상이 소송의 객체가 될 수 있듯이 탄소배출권도 이와 같이 사적거래 대상으로서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 민사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들이 동 장에서 검토한 것처럼 있었다. 영국의 관련소송의 시사점은 탄소배출권거래에 있어서도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유형의 불법적 행위(사기, 고객 비밀정보 활용)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로 거래 당사자의 행위에 있어 의심의 여지가 없는지 등, 일반적인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판결에서는 재판부는 탄소배출권(EUA)의 성격을 민사소송상의 일반적인 “권리”로는 보고 있지 않다. 다른 사람에게 상호관계적 의무를 부과하는 권리가 아니다라는 것이다.<sup>64)</sup>

이러한 의미에서 탄소배출권 소지자에게 CO<sub>2</sub>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는다. 이는 기껏해야 배출할 수 있는 허가(permission) 또는 자유(liberty), 아니면, 소지자에게 배출 금지 및 벌금부과로부터 면제시켜줄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하고 있다.<sup>65)</sup>

탄소배출권 소지자는 특정 레벨정도 이상의 CO<sub>2</sub> 배출을 금지하거나, 만일 그러한 배출을 하였다면 벌금을 지불할 것이 최소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기망자(fraudster)는 탄소배출권(EUA)을 의제신탁(constructive trustee)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피고 Winnington은 신탁

64) Id. 탄소배출권의 법적성격에 관한 국내 연구물로는 박시원 & 한상운, “외국의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법적 쟁점 분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 최경진,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민사법적 연구”, 『가천법학』 제6권, 2013

65) Armstrong DLW GmbH v. Winnington Networks Ltd, [2012] EWHC 10(Ch)



재산 영수(receipt)에 따르는 책임이 있다. Winnington은 의도적이고 부주의하게 정직하고 합리적인 자가 취해야 할 조사를 회피하였다. Winnington의 인식은 탄소배출권이 원고 Armstrong 소유가 아닐 수 있는 위험부담까지 포함한다. 탄소배출권을 영수함에 있어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에 대한 이행실패에 따르는 책임은 Winnington이 Armstrong에게 져야하는 상황인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하였다.<sup>66)</sup>

전 단락에서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격을 영국을 통해 살펴보았다. 탄소배출권의 성격에 대한 미국의 연구도 비교법적 시각을 제공한다. 온실가스배출 “권리”의 개념 및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산권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다. 온실가스배출이 할당이 가능하다는 점과 따라서 할당을 받은자에게 일정한 지위를 미국 여러 주에서 부과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 전통적인 재산권의 개념은 “사용할 수 있는 권한(right to use)”, 이전(transfer)할 수 있는 권한 등의 재산권에 따르는 부수적 권한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이는 주로 정부로부터의 간섭 및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내포하는 것이다.<sup>67)</sup> 따라서 탄소 배출권은 전형적인 의미의 재산권과는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탄소가 아니라 기타 배출대상에 대해서는 재산권적 성격의 윤곽을 마련한 경우가 있다. 대기청정법(Clean Air Act)상의 산성비 프로그램(Acid Rain Program)에서는 배출권거래의 재산권적 성격의 윤곽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이 있다.<sup>68)</sup> 동 프로그램에서의 배출허가(allowance)의 의미는 법적인 재산권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수준의 유향 및 질소를 배출할 수 있는 “제한된 허가(limited author-

66) Id.

67) David Freestone & Charolotte Streck, “Legal Aspects of Carbon Trading, Kyoto, Copenhagen, and beyon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396

68) Id.

ization[s])”의 개념으로 보았다.<sup>69)</sup> 비록 허가의 성격이지만 할당이 수여되며, 보유할 수 있고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탄소배출권의 법적 개념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거래를 희망하는 당사자에게는 탄소배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및 불확실성 요인을 감소시킬 것이다.

---

69) Id.



## 제 4 장 결 론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온실가스배출국으로서, 지구온난화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15. 1. 1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시장이 개장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가 개시되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실시 초기시점이기도 한 현재, 탄소배출권 할당과 관련 일부 기업이 환경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진행 중에 있다. 현재는 할당분야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나, 본격적으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정부를 상대로 하는 다른 유형의 행정소송 뿐만 아니라, 사인간의 민사소송 등, 그 유형이 다양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EU의 경우 2005년부터 EU차원의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EU-ETS는 제1기(2005-2007), 제2기(2008-2012)를 거쳐, 현재 제3기(2013-2020)에 있다. EU는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배출권거래 시장을 운영 중에 있다.<sup>70)</sup> 유럽 내에서는 2015년 현재 31개국(EU회원국 28개 및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등 3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 시장이 형성되었다.

영국은 EU의 주요국으로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 ETS)가 적용되며 이에 따르는 각종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국가이다. EU내 주요 국가인 영국은 동 제도 시행 초기 탄소배출권 할당에 관한 소송이 있었으나, 현재는 할당 분야에 대한 소송은 희박하며, 배출권거래와 관련하여서는 민사간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탄소배출권관련 민사소송을 유형화시켜 분류해보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70) 2012년 기준 전세계 배출권 거래량 107.3억 톤 중 72%에 해당하는 77.2억 톤이 EU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거래되었다.

영국의 탄소배출권 관련 민사소송 분야 사례분석은, 한국에서 탄소배출권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예측해보고, 향후 탄소배출권 민사거래 지침의 업데이트 시 활용할 수 있는 쟁점의 분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영국의 경우 탄소배출권이라는 고유의 특성에 기인한 독창적인 유형의 민사분쟁은 찾기 힘들다. 민사거래의 대부분의 대상이 소송의 객체가 될 수 있듯이 탄소배출권도 이와 같이 사적거래 대상으로서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 민사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들을 본문에서 검토하였다. 영국의 관련소송의 시사점은 탄소배출권거래에 있어서도 다른 민사거래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유형의 불법적 행위(사기, 고객 비밀정보 활용)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거래에 있어 의심의 여지가 없는지 등, 일반적인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것과 거래 당사자는 계약내용의 충실히행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국내문헌

강승진,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도입, 합리적 대안은 무엇인가?”, 『바른 사회 시민회』 토론회 자료집, 2014. 8. 21.

박시원 & 한상운, “외국의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법적 쟁점 분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

박세정, “유럽의 10년 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탄소 배출권거래 시장”, 『경제신문 디지털타임스』, 2015. 4. 17.

안승광, “탄소배출권과 탄소시장”, 『기업지배구조리뷰』,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6쪽 이하

안종오, “배출권거래제도의 소송상 쟁점에 관한 연구”, 『법학평론』, 2015, 239쪽 이하.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교토의정서”, 유넵프레스, 2002, 11쪽 이하

최경진,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민사법적 연구”, 『가천법학』 제6권, 2013, 74쪽 이하

### □ 외국문헌

Catherine Elliott & Frances Quinn, “English Legal System(Sixth edition)”, Pearson Education Limited, 2005, p148-162, p415

David Freestone & Charolotte Streck, “Legal Aspects of Carbon Trading, Kyoto, Copenhagen, and beyon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참 고 문 헌

p11.; Scott D. Deatherage, “Carbon Trading Law and Practice”,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42.

Department of Energy & Climate Change, “2014 UK Greenhouse Gas  
Emissions- Provisional Figures”, 26 March, 2015, p17

Gary Slapper & David Kelly, “The English Legal System(15th edition,  
2014-2015)”, Routledge, p233, 243

James Maurici, “Litigation and the EU Emissions Trading Scheme”, 5  
March, 2009

Linanna Bried, “Barclays Settles Misuse of Confidential Info Lawsuit  
with CF Partners”, September 26, 2014

Lord Woolf, “Access to Justice Report”, 1996

Roger Best & Peter Zaman, “Armstong v Winnington - taking allowance(s)  
with the law”, Feb. 2012

**법령자료**

Climate Change Act 2008 (UK)

Civil Procedure Rule (UK)

Commission Regulation 1193/2011, Article 37 (Nature of allowances and  
finality of transactions)

**민사판례 자료(영국)**

Armstrong DLW GmbH v. Winnington Networks Ltd, [2012] EWHC  
10(Ch).

Deutsche Bank AG v Total Global Steel Ltd, [2012] EWHC 1201  
(Comm)

CF Partners (UK) LLP v Barclays Bank Plc and another, [2014] EWHC  
3049 (Ch)

## □ 온라인 자료

주한 영국대사관 기후변화과,

[http://ukembassyclimate.tistory.com/category/기후%20변화%20대  
응%20정책/영국의%20정책](http://ukembassyclimate.tistory.com/category/기후%20변화%20대응%20정책/영국의%20정책) (최종검색: 2015. 10. 25)

Civil Procedure Rules (Woolf Reforms),

[https://en.wikipedia.org/wiki/Civil\\_Procedure\\_Rules](https://en.wikipedia.org/wiki/Civil_Procedure_Rules)(최종검색: 2015.  
10. 24)

County court civil litigation process,

<http://www.civilprocedurerules.co.uk/flcpc.htm>(최종검색: 2015. 10. 24)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UK and Crown Dependencies 1990-2014,  
(MtCO<sub>2</sub>e),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  
ata/file/416810/2014\\_stats\\_release.pdf](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16810/2014_stats_release.pdf) (최종검색: 2015. 10. 25)

European Emission Allowances, Global Environmental Exchange, [https://](https://www.eex.com/en/market-data/emission-allowances/spot-market/european-emission-allowances#!/2015/10/30)

[www.eex.com/en/market-data/emission-allowances/spot-market/europe  
an-emission-allowances#!/2015/10/30](https://www.eex.com/en/market-data/emission-allowances/spot-market/european-emission-allowances#!/2015/10/30)(최종검색: 2015. 10. 25)

Linanna Bried, “Barclays Settles Misuse of Confidential Info Lawsuit  
with CF Partners”, September 26, 2014

[http://www.ibtimes.co.uk/barclays-settles-misuse-confidential-info-law  
suit-cf-partners-1467284](http://www.ibtimes.co.uk/barclays-settles-misuse-confidential-info-law-suit-cf-partners-1467284)(최종검색: 2015. 10. 23)

참 고 문 헌

- Ministry of Justice(UK), “UK, CPR-Pre-Action Protocols”,  
<https://www.justice.gov.uk/courts/procedure-rules/civil/protocol>(최종  
검색: 2015. 10. 25)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Kyoto Protocol,  
[http://unfccc.int/kyoto\\_protocol/items/2830.php](http://unfccc.int/kyoto_protocol/items/2830.php) (최종검색: 2015. 10. 25)